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1호

「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
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
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2월 13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민족·민주·평화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상주시
일원에서 거행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
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임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다.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규정(안 제4조)
- 라. 사업의 위탁 관리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,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
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
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
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

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